의안번호	제53호
의결연월일	2022. 11. 11.

-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-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1. 1. 예산군수

○ 회 부 일 자 : 2022. 11. 2. 행정복지위원회

○ 상 정 일 자 : 2022. 11. 9.

제286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워회

# 2. 제안설명 요지 (행정복지국장 : 최명락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「아이돌봄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총칙 규정(안 제1조~제3조)
  - 목적, 지원대상, 지원내용
- 서비스 제공 절차 규정(안 제4조~제7조)
  - 서비스제공 신청, 절차, 중지 및 환수 기준

## 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완호)

- 본 조례안은「아이돌봄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경제 적인 부담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을 제정하는 것으로,
- 「아이돌봄지원법」제4조(국가등의 책임) 및 제20조(비용의 지원 등)와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
  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# 4. 질의・답변요지

O 없 음

## 5. 토론요지

O 없 음

# 6. 심 사 결 과

○「원안가결」

# 7. 소수의견 요지

O 없 음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O 없 음